

**- 2014년도 소방공무원(소방항공, 특수재난대응) -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공고**

2014년도 소방공무원 제한경쟁(소방항공 및 특수재난대응분야)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0일

중앙소방학교장

1. 선발예정인원 : 총 6명

※ 남여 구분 없음

소방방재청 : 1명

선발분야	계급	인원	근무예정부서	주요직무
소방항공	소방위	1명	119구조구급국	소방항공정책담당

중앙119구조본부 : 5명

선발분야	계급 및 인원			근무예정부서	주요직무
	계	소방위	소방장		
화학	3명	1명	2명	중앙119 구조본부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생물	1명	-	1명		생물사고 예방 및 대응
원자력	1명	1명	-		원자력사고 예방 및 대응

2. 시험구분 및 일정

시험구분	일 정	장 소	합격자 발표
원서접수	‘14. 7. 31(목) ~ 8. 4(월) 09:00 ~ 18:00	인터넷 원서접수 (119gosi.kr)	응시표 출력 ‘14. 8. 7(목) ~
체력시험 서류전형	‘14. 8. 12(화) 10:00	8. 8(금) 별도공고	‘14. 8. 14(목)
신체 및 인·적성검사	‘14. 8. 18(월) 09:00	8. 14(목) 별도공고	‘14. 9. 5(수)
실기시험	‘14. 8. 23(토) 10:00	중앙소방학교	‘14. 8. 27(수)
면접시험	‘14. 9. 2(화) 10:00	중앙소방학교	‘14. 9. 5(금)

※ 일정은 사정에 따라 7일전 변경 공고 될 수 있으며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

3. 시험방법 및 합격결정

* 선행시험 합격자에 한해 다음시험 응시가능

가. 체력시험

- 일시 및 장소 : 2014. 8. 12(화) 10:00 ~ / 장소 별도 공고
-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 붙임 1 참고
 - 6종목(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 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 측정방법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7조 관련 [별표 4]
- 합격결정 : 6종목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30점)이상 득점한 자

나. 서류전형

- 제출일시 : 2014. 8. 12(화) 10:00
- 방 법 : 체력시험 당일 직접제출

○ 제출서류

화학분야(학력)	생물,원자력(경력)	소방항공(자격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위(졸업) 증명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계통학과의 경우 증명서 첨부(붙임2 참고) •기본증명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력증명서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기본증명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종사자격증 사본 1부 •비행경력증명서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항공무선통신사 등 자격증 1부 •항공신체검사서 1부 •기본증명서 1부
<p>《 경력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증명서는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중 선발분야 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재직 시 징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 있어야 함. ○ 국민건강보험등 4대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으로써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 제출할 경우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 될 경우 당해시험 무효 및 취소 처리 됨 <p>《 면허(자격) 및 경력증명 제출 시 기준일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증 : 원서접수일로부터 최종 면접시험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경력기간 : 최종 면접시험일 		

다. 신체 및 인종성검사

○ 신체검사

- 검사기관 : 천안의료원(예정), 검사료(40,000원) 응시자 개별납부
- 신체조건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
- 판정기준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 [별표3] / 붙임3 참고

○ 인종성검사

- 검사기관 : 8. 14(목) 별도 공지
- 검사방법 : 오프라인 검사로 객관식 선택형

라. 실기시험

○ 평가방법 : 구술형(5문항)

○ 평가범위 및 수준

- 소방항공분야 : 항공 전문 기술 및 정책의 기획·관리 능력 검정
- 화학·생물·원자력 물질 사고에 대비한 물질의 성상·위험성 및 예방·대응방안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에 관한 평가

○ 합격결정 :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마. 면접시험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8조 관련 [별표5]

○ 평가방법 : 1단계(집단면접) + 2단계(개별면접)

○ 평가요소 및 평가점수

단 계	평 가 요 소	평가점수(60점)
1단계 (집단면접)	① 전문지식·기술과 그 응용능력	10점
	②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10점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10점
2단계 (개별면접)	④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	20점
	⑤ 예의·품행·성실성 및 봉사정신	10점

○ 합격자 결정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30점)이상 득점한 자
(단, 5개의 평가요소 중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40%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바.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의 합격자 중 체력시험성적 25%, 실기시험성적 65%, 면접 시험성적 10%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위(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에 대해 전원 합격 결정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 채용예정인원에 미달 또는 결원 보충 필요시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

4. 응시자격 등

*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최종시험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가. 공통 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제1항에 의거 종전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및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
- ②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나. 선발분야별 자격요건

선발분야		응시자격	취득자격	계급	인원
소방 항공	자격 증	항공법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조종경력 2년 이상 인자로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신체검사서 제1종 증명을 받은 사람 - 회전익 항공기 2,000시간이상 비행경력 - 항공무선통신사 또는 전파전기통신기사 소지자 </div>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	소방위	1명
화학	학력	화학과,응용화학과,화학공학과,정밀공업 화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 유사 학과 : 해당학교 총(학)장이 발행한 「동 일계통학과 증명서」 로 인정	박사학위	소방위	1명
			석사이상	소방장	2명
생물	경력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 있는 직무분야의 근무 □ 연구경력 3년 이상으로서, 당해 임용 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계급환산 기준표 참고	소방장	1명
원자력				소방위	1명

< 계 급 환 산 기 준 표 >

구분 계급	국가·지방 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경 찰 공무원	군 인	교육공무원			정부관리 기업체
				초·중·고 등학교교원	전문대학	4년제 대학교원	
소방위 지방 소방위	6급	경 위	중위·소 위·준 위	11~13 호 봉	9~10 호 봉	7~8 호 봉	계 장 , 대 리
소방장 지방 소방장	7급	경 사	상 사	9~10 호 봉	8호봉 이 하	6호봉 이 하	평 사 원 (3년이상)

다. 거주지 제한 : 없음

라. 응시연령

○ 소방항공분야

- (소방위) 23세 이상 ~ 45세 이하(1968. 1. 1. ~ 1991. 12. 31.)

○ 화학, 생물, 원자력 분야

- (소방위) 23세 이상 ~ 40세 이하(1973. 1. 1. ~ 1991. 12. 31.)

- (소방장) 20세 이상 ~ 40세 이하(1973. 1. 1. ~ 1994. 12. 31.)

<< 응시 상한 연령 연장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기사, 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 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 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군복무기간 - 1년 미만 :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 : 2세, 2년 이상 : 3세 각각 연장】

마.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

부분별	합격기준
체격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흉위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시력	두 눈의 나안(裸眼)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신(色神)	색각이상(色覺異狀){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상기 신체조건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기간 : '14. 7. 31(목) 09:00 ~ 8. 4(월) 18:00(기간내 24시간)

나. 접수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119gosi.kr)만 실시

다. 응시 수수료 : 7,000원 휴대폰결제·카드결제·계좌이체 등 가능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원서접수 취소 시 납부한 응시 수수료 전액 환불

라. 응시원서 접수 유의사항

- 사진은 응시원서 접수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으로, 사진파일(jpg) 규격은 3.5cm(가로)×4.5cm(세로)이며, 해상도는 100dpi이상이어야 합니다.
- 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으며, 선발분야 및 계급별 중복접수는 불가합니다.
- 응시표는 원서접수센터(119gosi.kr)에서 응시표 출력기간에 출력할 수 있으며 시험 당일 신분증과 함께 지참하여야 합니다.

6.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은 원서접수일 기준으로 응시희망자는 본인의 응시자격 요건이 적합한지 판단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나. 응시원서 상 기재착오, 누락 또는 자격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다. 시험에 있어 부정행위를 하거나, 각종 증명서를 허위로 제출 시 관련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며, 향후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라. 시험 응시자는 당일 시험응시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고, 체력검정시험 등 각 시험 시작 30분전까지 입실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 본 시험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문의처 :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 041-550-0963)

붙임1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종 목	성별	평 가 점 수									
		1	2	3	4	5	6	7	8	9	10
악력 (kg)	남	45.3~ 48.0	48.1~ 50.0	50.1~ 51.5	51.6~ 52.8	52.9~ 54.1	54.2~ 55.4	55.5~ 56.7	56.8~ 58.0	58.1~ 59.9	60.0 이상
	여	27.6~ 28.9	29.0~ 30.2	30.3~ 31.1	31.2~ 31.9	32.0~ 32.9	33.0~ 33.7	33.8~ 34.6	34.7~ 35.7	35.8~ 36.9	37.0 이상
배근력 (kg)	남	147~ 153	154~ 158	159~ 165	166~ 169	170~ 173	174~ 178	179~ 185	186~ 194	195~ 205	206 이상
	여	85~ 91	92~ 95	96~ 98	99~ 101	102~ 104	105~ 107	108~ 110	111~ 114	115~ 120	121 이상
앞아랫몸 앞으로 굽히기 (cm)	남	16.1~ 17.3	17.4~ 18.3	18.4~ 19.8	19.9~ 20.6	20.7~ 21.6	21.7~ 22.4	22.5~ 23.2	23.3~ 24.2	24.3~ 25.7	25.8 이상
	여	19.5~ 20.6	20.7~ 21.6	21.7~ 22.6	22.7~ 23.4	23.5~ 24.8	24.9~ 25.4	25.5~ 26.1	26.2~ 26.7	26.8~ 27.9	28.0 이상
제자리 멀리뛰기 (cm)	남	223~ 231	232~ 236	237~ 239	240~ 242	243~ 245	246~ 249	250~ 254	255~ 257	258~ 262	263 이상
	여	160~ 164	165~ 168	169~ 172	173~ 176	177~ 180	181~ 184	185~ 188	189~ 193	194~ 198	199 이상
윗몸일으 키기(회분)	남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이상
	여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이상
왕복오래 달리기(회)	남	57~59	60~61	62~63	64~67	68~71	72~74	75	76	77	78이상
	여	28	29~30	31	32~33	34~36	37~39	40	41	42	43이상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

종 목	측 정 방 법 등
악 력 (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스메들리(smedley)식 악력계 ○ 측정 단위 : kg ○ 측정 방법: 똑바로 선채로 양발을 적당히 벌려서 기립자세를 취하고 손가락의 제 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잡은 다음 폭을 조절해 다시 잡고 좌, 우 교대로 2회씩 측정하여 가장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배 근 력 (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배근력계 ○ 측정 단위 : kg ○ 측정 방법 : 양발을 15cm 정도 벌린 자세로 배근력계 위에 올라서서 상체를 앞으로 약간 기울여 배근력계 손잡이를 잡은 후 배근력계와 상체의 각도가 30°가 되도록 배근력계 손잡이의 높이를 최적으로 조절한다. 준비가 되면 전력을 다해 몸을 일으킴으로써 배근력을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앞아랫몸 앞으로 굽히기 (c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앞아랫몸앞으로굽히기 측정대(전자식 측정기 가능), 매트 1개 ○ 측정 단위 : cm ○ 측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검자는 신을 벗고 양 발바닥이 측정기구의 수직면에 완전히 닿도록 하여 무릎을 펴고 바르게 앉는다. 양발 사이의 넓이는 5cm를 넘지 않게 한다. - 양 손바닥은 곧게 펴고 왼손바닥을 오른손 등위에 올려 겹치게 하여 준비 자세를 취한다. - '시작' 구호에 따라 상체를 천천히 굽히면서 측정기구의 눈금 아래로 손을 뺀친다. - 보조원은 피검자가 윗몸을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피검자의 무릎을 가볍게 눌러준다. - 계측원은 피검자의 손가락 끝이 3초 정도 멈춘 지점의 막대자 눈금을 읽어서 기록한다. -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p>※ 유의사항 : 허리의 반동을 이용하거나 갑작스럽게 상체를 굽혀 손을 뺐혔을 경우 또는 피검자가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을 굽혔을 경우 재검사를 실시한다.</p>

종 목	측 정 방 법 등
제자리 멀리뛰기 (c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구름판 및 모래터(구름판 위치와 같은 높이로 모래를 정리) 또는 전자식 제자리 멀리뛰기 측정판 ○ 측정 기록 : cm ○ 측정 방법 : 발 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 발 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착지점(신체의 어느 한 부분)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윗몸 일으키기 (회/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매트(윗몸일으키기대, 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 측정 기록 : 회 ○ 측정 방법 : 양발을 3cm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혀 세우며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여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 이상 일으킨다.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왕복오래 달리기 (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길이 20m, 1인당 폭 1m 이상 되는 평평하고 미끄럽지 않은 공간 - 음량이 적절한 CD 플레이어 또는 카세트플레이어 - 점증속도에 따라 울리는 신호음이 녹음된 CD 또는 오디오카세트 - 녹음 CD : 별도 ○ 측정 기록 : 단위(회) ○ 측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m코스의 양쪽 끝선에 테이프나 분필로 선을 긋는다. - 출발신호원의 ‘출발’ 신호에 맞춰서 출발한다. - 먼저 도착한 피검자는 출발자의 ‘출발’ 신호가 다시 울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신호가 울리면 다시 반대쪽 라인 끝을 향해 달린다. - 매 분마다 점점 빨라지도록 정해진 속도에 맞추어 20m 거리를 가능한 오래 왕복하여 달린다. - ‘출발’ 신호가 울릴 때까지 도착하지 못했을 경우에 최초 1회는 신호가 울릴 때 방향을 바꾸어 달릴 수 있으나 두 번째로 신호음이 울리기 전에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탈락이 된다. - 왕복하는 동안 정해진 주기에 따라 속도가 빨라진다. - 동시에 출발한 피검자가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검사는 종료되고 이때까지 달린 20m 거리의 횟수를 기록한다.

※ 비고 :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측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왕복오래달리기 종목의 경우 실수로 넘어진 경우 포함) 그 해당 종목에 한하여 재 측정 기회를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붙임2

동 일 계 통 학 과 증 명 서

성 명		생년월일			
학교 연락처		응시자 연락처 (휴대폰)			
학교명		학과 (전공)		졸업 일자	년 월 일

위 사람이 전공한 학과는 2014년도 소방공무원(화학분야) 제한경쟁 특별 채용시험 공고에 기재된 _____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합니다.

담당자	(부서)	성명	(인)
	(전화)		

2014. 7. .

총(학)장 (직인)

중앙소방학교장 귀하

붙임3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구 분	내 용
1. 일반 결함	가. 예후가 불량한 악성종양 나. 난치의 사상균성 장기질환 다. 난치의 사상충병(휘다리야병·트리빠노썸마병·일본주혈흡충병) 라.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없어지지 아니한 사람
2. 비·구강· 인후기관 계통	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회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구강·인후·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나. 정상적인 식사섭취가 곤란한 식도 협착
3. 치아 계통	가. 진구성인 아래턱관절강직, 음식물을 씹는 근육(저작근)의 질환 및 손상으로 30mm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사람 나. 아래턱 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다. 진구성 복잡 악골절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라. 발음기능 및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잃은 사람
4. 흉부	가.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다.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지 확장증, 중증 폐기종, 중증 활동성 폐진균질환
5. 심장· 혈관 및 순환기 계통	가. 심부전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150회/분 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방실전도장애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사. 폐성심

구 분	내 용
6. 복부장기 및 내장 계통	<p>가.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증대</p> <p>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만성 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p> <p>다. 거대결장·계실염·회장염·궤양성 대장염으로서 난치인 경우</p>
7. 생식 비뇨기 계통	<p>가. 중증 요실금</p> <p>나. 진행성 신기능(腎機能) 장애를 동반하여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신질환(腎疾患)</p> <p>다.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활동성 신결핵(腎結核) 또는 생식기결핵</p> <p>라.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증후군(腎症候群)</p>
8. 내분비 계통	<p>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이상으로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비가역적인 합병증</p> <p>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p> <p>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반질환이 합병되어 있는 에디슨씨병</p> <p>라. 현재 뇌하수체 기능 장애에 대한 약물(호르몬)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수체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능장애 등의 합병증</p> <p>마.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당뇨병성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p>
9. 혈액 또는 조혈 계통	<p>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치료하기 곤란한 혈우병</p> <p>나.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p> <p>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재생불량 빈혈</p> <p>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을 포함)</p> <p>마. 진성적혈구 과다증</p> <p>바. 백혈병</p>
10. 신경 계통	<p>가.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p> <p>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p> <p>다. 만성 진행성·퇴행성 질환 및 탈수조성 질환(유전성 무도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보행실조증, 다발성경화증 포함)</p> <p>라. 뇌 종양 및 척수 종양</p>

구 분	내 용
10. 신경계통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외상성 신경질환 바.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말초신경질환 사. 전신성·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 아.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11. 사지	가. 소방장비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필기능력이 없는 사람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골절·관절 질환자
12. 귀	가. 두 귀의 교정청력이 각각 40dB 이상인 사람
13. 눈	가. 두 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 미만인 경우 나. 두 눈의 시야협착이 모두 1/3 이상인 경우 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활동성·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 라. 중심 시야 20 이내의 복시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眼球振盪)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색각이상(색맹 또는 적색약)
14. 정신계통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성격 및 행동장애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병 라. 마약중독 및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자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간질
15. 흉위	가. 신장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
16. 혈압	가. 고혈압 : 수축기 145mmHg을 초과 또는 확장기 90mmHg 초과 나. 저혈압 : 수축기 90mmHg 미만 또는 확장기 60mmHg 미만
17. 운동신경	가.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있는 경우